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173
----------	-----

발의년월일 : 1993. 6. 3.
발 의 자 : 윤태봉의원의6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대상

- (1) 부구청장
- (2) 총무국장
- (3) 재무국장
- (4) 시민국장
- (5) 도시정비국장
- (6) 건설국장
- (7) 보건소장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1. 목 적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

2. 관계 공무원 출석 일시

가. 일 시 : '93. 6. 4(금) 14:00 (1일간)
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다. 출석 대상 공무원
(1) 부구청장

- (2) 총무국장
- (3) 재무국장
- (4) 시민국장
- (5) 도시정비국장
- (6) 건설국장
- (7) 보건소장

3. 규정질문 범위

가. '93년도 구정업무 전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에관한건

의안 번호	172
----------	-----

제안년월일 : 1993. 6. 3.
제 안 자 : 배기한의원의6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구의회도 집행기관의 '92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여 승인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위원의 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항 1에 해당하는 자

- (1) 영등포구의회 의원
- (2)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3)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나. 선임방법

-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2) 선임된 감사위원중 대표자는 의원으로 하되 연장자로 한다.

3. 관계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감사위원선임에관한건

1. 목적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감사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항1에 해당하는 자.

- 가. 영등포구의회 의원
- 나.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다.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3. 선임방법

- 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나. 선임된 감사위원중 대표자는 의원으로 하되 연장자로 한다.

4. 결산검사사항

- 가. 세입·세출의 결산
- 나.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라.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마. 금고의 결산

5. 결산검사기관 및 감사의견서 제출

가.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감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